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1655
등록일자	2016.1.12.
결재일자	2016.1.1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	
김하나	한문석	대경재하	전결 01/12 김효길		
협조자					

## -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- 2016년 장애인연금지원 계획

사업기간 : 2016.1.1. ~ 12.31.

대상자 :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
-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자

- 선정기준액

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소득기준	1,000천원	1,600천원

지원인원 : 2,650명

총사업비 : 7,404,000천원(국비 3,702,000천원 사비 1,851,000천원 구비 1,851,000천원)

급여종류

- 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( 20,000원 ~ 202,600원)

-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( 20,000 ~ 282,600원)

2016. 1. 12 .

**강 남 구**  
(사 회 복 지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
관련 규정 및 근거	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포('10. 4. 12) / 시행일('10. 7. 1) •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'11. 7. 28 시행) •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(지침) 개정 안내 (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-110(2016.1.5.)
추진 경위	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 법정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
예산 사항	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 계속사업
수혜자 및 범위	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• 대상 : 강남구 등록 장애인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 ) (신규 : )	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 )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 ⑤ 시장조사 ----- ( ) 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 O )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 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
타 기관 사례	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• 법정 사업으로 전국시행
전문가 자문	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• 해당사항 없음.

-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-

## 2016년 장애인연금 지원계획

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자 함.

### I 추진근거

-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포('10. 4. 12) / 시행일('10. 7. 1)
-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'11. 7. 28 시행)
- 201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(지침) 개정 안내(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-110(2016.1.5.))

### I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
- 대상자 : 만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  - 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더 있는 자
  - 선정기준액

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소득기준	1,000천원	1,600천원

- 지원인원 : 2,650명
- 총사업비 : 7,404,000천원(국비 3,702,000천원 사비 1,851,000천원 구비 1,851,000천원)
- 급여종류
  - 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
  -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

### III 연금액

(단위 : 원)

구분	18-64세			65세 이상	
	기초급여		부가급여	기초급여	부가급여
	단독	부부2인수급			
기초생활보장수급자 (생계,의료수급)	202,600	162,080	80,000	-	282,600
차상위계층 (생계,의료수급)	최고 202,600	최고162,080	70,000	-	신규70,000/ 기존(특례)140,000
차상위 초과자	최고 202,600	최고162,080	20,000	-	40,000
보장시설수급자 (생계,의료수급)	202,600	162,080	-	-	기존(특례)70,000

※ 기초급여: 2015.4월 ~2016.3월 : 202,600원  
 2016.4월 ~2017.3월 : 205,230원 (인상예정)  
 부가급여: 2015.4월 ~2016.3월 : 20,000~282,600원  
 2016.4월 ~2017.3월 : 20,000~285,230원 (인상예정)

- 지원방법 : 매월 20일 대상자 개별 계좌로 무통장 입금

### III 추진계획

- 신청절차 : 신청 ⇒ 자산조사 ⇒ (장애등급심사) ⇒ 대상자 결정 및 지급
- 급여 적기 지급 : 매월 20일 정기지급
- 대상자 관리 : 자격변동자 수시 관리(전출입, 사망, 등급조정 등)

### IV 소요예산

.....7,404,000천원

- 산출근거 : 2016년 장애인소득보장 등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 예산계산신청지침통보- (서울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-7082(2015.4.16.)) 반영
  - 장애인연금(생계,의료수급) 304,000원 \*1,500명 \*12월 = 5,472,000천원
  - 장애인연금(생계,의료수급외) 140,000원 \*1,150명 \*12월 = 1,932,000천원
- 재원 : 국비 50%, 시비 25%, 구비 25%

- 예산과목** : 사회복지과,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생활안정지원, 장애인연금지원,  
일반보상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**V 기대효과**

-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기여